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이상신**

<요 약>

상속세가 과중하여 적정한 상속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 및 입법 활동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속권의 의미, 상속세와의 관계를 ‘상속’의 본질과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배우자 지위의 특수성, 상속세의 이중과세, 공제제도 등과 세부담의 적정성, 인플레이션 반영 등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설명하였다. 논의 결과 현재의 상속세제는 그 부담이 과중하고, 배우자에 대한 부담도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식으로 면세점을 큰 액수로 인정하고 각종 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상속세법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의 입법개선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사전상속 가산기간을 10년에서 3년이나 5년 등으로 단축하여야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기준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상속분의 범위에 있는 한 배우자공제한도를 30억 원에서 증액하거나 그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여야 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시각을 상속의 문제가 아닌 “고용의 측면” 또는 “계속기업의 측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 지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면세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은 상속세의 적용을 단순화하는 것이어서 상속세의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상속세, 가업상속, 배우자공제, 과세표준 구간상승(bracket creep), 유산취득세

* 이 논문은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sslee@uos.ac.kr

I. 서 론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언론보도 등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고,¹⁾ 이에 따라 그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2019년에만 제안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24개에 달하고 있다.²⁾ 그 중 가장 최근에 제안된 의안번호 2022793의 제안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주식보유비율을 완화하되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가업의 영속을 지원하여 다년간 축적된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및 그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으며, 24개의 개정안 대부분이 가업상속을 위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거나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모두 상속세의 과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상속세제는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의 형성 및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³⁾ 설사 그러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과중한 세 부담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상속세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또 기업의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정한 상속세’의 부담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논의 및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이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현행 제도가 “상속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느냐”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상속”개념을 다음 세대에 대한 것으로 본다면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론 상 또는 입법례 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을 포함한다. 기본권 또는 제도보장이 되는 경우 그 부담이 적정한지 여부는 상속세법상의 여러 제도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속세 과세제도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먼저 상속권과 상속세와의 관계,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 상속세제 개편방향 등의 순으로 서술하고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한다.

1) 매일경제, “韓상속세 명목·실효세율 모두 세계최고… 부의 세습 아닌 기업영속성 차원서 봐야”(2019.5.28.자), 서울경제, “세계최고 수준 상속세… 오너들 세금 내느라 지분 줄줄이 매각”(2019.5.28.자). 특히 뉴스1, “경총 “징벌적 상속세를 내려야”… 정부에 의견서 제출”(2019.8.14.)에는 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이 정리되어 있다.

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 최종접속일 2019.10.4.)

3) 예컨대 차진아,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6, p.149.

II. 상속권과 상속세와의 관계

1. 상속권의 보장과 제한

민법상 상속은 ‘자연인의 재산법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그 자의 사망 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케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⁴⁾ 그런데 독일은 연방헌법 제14조에서 “상속권과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함으로써 명문으로 상속권을 보장한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규정은 없으나 재산권의 한 종류로써 당연히 보장된다.⁵⁾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경우 상속권은 그 범주 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에서는 소유권의 항구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당연히 상속권을 내포한다.⁶⁾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⁷⁾ 역시 상속권도 재산권의 한 종류로서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이러한 점을 명시한 결정도 다수 있다.⁸⁾

상속권이 재산권으로 보장되던 아니면 제도보장으로 보장되던 관계없이⁹⁾ 그 보장에는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성에 따른 제한은 “보상 없이”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수용 등 다른 제한과 구별된다.¹⁰⁾ 어쨌든

4) 박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p.2.

5) 김학성, 『헌법학원론(전정판)』, 피앤씨미디어, 2018, p.522. 등 다수설이다.

6) 박윤직, 전제서, pp.20-21.

7)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8)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우리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 동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 동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등).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 헌바190(헌법불합치)).

9) 기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장에 그치는 제도보장과 구별되며, 재산권보장은 권리·제도 동시보장이라는 것이 다수설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태도이다(성낙인, 『헌법학(제19판)』, 법문사, 2019, p.1286).

10) 양건, 『헌법강의(제4판)』, 법문사, 2013, p.608.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침해”가 아니어야 한다.¹¹⁾

이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가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¹²⁾ 따라서 조세 부담이 어느 정도이어야 “중대한 제한”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한 재산권의 강제취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세나 공과금의 부담도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재산권에 대한 강제와 다르지 않으므로 조세징수에 의해서도 재산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¹³⁾

이러한 논리를 상속세와 관련하여 정리한다면 “상속세 부담이 사유재산 처분의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상속세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속의 의미와 배우자 상속의 특수성

“상속세의 본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돈을 벌어서 쓰고 남은 것은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처럼, 그것은 돈을 버는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여부이다. 사유재산제도만으로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혈연대가설, 공동생활설, 사후부양설 등이 있으나 현재의 다수설은 이를 포괄하여 다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⁴⁾ 다른 측면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상속의 의미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본래의 의미로 본다면 “상속”은 “다음 세대로의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이전”이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세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와 같이 정의하게 된다. 자손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 때문에 “민법상 상속”은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포함하여 정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민법 제1003조) 미국,¹⁵⁾ 일본, 독일 등도 모두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11) 김학성, 전거서, p.315.

12) 헌법재판소 1997.12.24.선고 96헌가19, 96헌바72(병합).

13) 김학성, 전거서, p.539.

14)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18, p.298 ; 박훈·채현석·허원,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 삼일인포마인, 2016, pp.55-57.

15) 김상훈, 『미국 상속법』, 세창출판사, 2012, p.31.

이러한 논의를 상속세와 연결하면, 다음 세대로의 재산이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을 계기로 하여 발생하는 재산이전에 대해서 모두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음 세대로의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에 의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면제하거나 배우자공제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 된다. 우리의 전통 관습은 부모의 유산을 자녀 사이에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제1순위 상속인은 자녀였는데, 자녀가 없을 때에 한하여 생존배우자가 그 종신에 한하여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하였다는 설명,¹⁶⁾ 가업상속 등은 다음 세대로의 재산이전을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간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¹⁷⁾ “아래 세대로 이전=상속”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망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인정되지만 다른 상속인과 동등하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상속 과정상 배우자의 지위는 민법에 의해 정해지고(민법 제1003조), 세법은 그 정해진 지위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에 따르고 있다.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5할을 가산하고 기타 직계비속 등의 상속분을 균등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009조), 개념상 “사망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이전”을 상속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일본의 경우 1억 6천만 엔(약 16억 원 상당)에 상당하는 상속세까지는 배우자공제가 인정되며, 독일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75만 5천 유로, 자녀는 연령에 따라 최대 45만 2천 유로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¹⁹⁾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모두 배우자 상속을 과세하지만 그 공제액은 다른 상속인에 비해 높게 인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16) 박훈·채현석·허원, 전거서, p.59.

17) 영국의 경우 영국 역내 주소지를 둔 배우자간의 상속과 영국 역외 주소지를 둔 배우자간의 상속은 과세되지 않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부 간의 부의 이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오종현·최승문·강성훈,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연구보고서 16-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12, pp.45-54).

18) 사망에 의한 재산이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상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 즉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상속의 경우에만 상속인이 존재하게 된다(곽윤직, 전거서, p.7).

19) 서정우,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 : 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제18집 제3권)』,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9, p.151.

3. 상속세와의 관계

가.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유와 적절한 상속세 부담

상속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 창출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부의 집중 억제 및 응능부담의 실현 등을 위해 과세한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²⁰⁾ 상속도 포괄적 의미의 소득을 구성하지만 과다한 누진과세가 되므로 별도의 과세체계를 두어 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 부의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사회정책적 의미가 있다는 설명²¹⁾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는 상속제도의 존재 이유 및 상속세 과세 필요성과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속세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상속 그 자체를 유망무실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정부가 부의 분산 등을 위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정부의 효율성·공정성을 전제로 해서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율이 높아질수록 그러한 조화 여부가 더더욱 문제된다. 한편, 상속에는 유족의 생활보장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최저세율은 낮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²²⁾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그 지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과세 내용도 차이가 있게 된다. 세 부담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나. 소득세 부과 후의 상속세 부과와 이중과세 논란

상속세의 적정 부담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미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조세를 납부한 후의 잔여 재산에 대하여 이를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별도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그것이다.²³⁾ 이 경우의 이중과세란 결국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부 후 남겨진 유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사전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13조) 증여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나중에 증여세납부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쨌든 이러한 의미의 이중과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할 때에 의미가 더욱 명확하고,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누진율이 완화되므로 상대적으로 문제제기가 적을 것이다. 입법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유산세 방식을, 일본과 독일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되는데,²⁴⁾ 같은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더라도 미국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미국 세법 상 증여

20)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 19 결정.

21)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신정10판), 박영사, 2014, pp.707-708.

22) 박윤직, 전게서, p.59.

23) 차진아, 전게 논문, pp.149-154.

24) 오종현·최승문·강성훈, 전게 보고서, pp.44-55.

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소득(income)인지 여부에 다름이 있었으나 연방세법 제102조(a)²⁵⁾는 이를 소득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²⁶⁾ 유증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세법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기 때문에(section2502(c)),²⁷⁾ 유증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어쨌든 이러한 이중과세 주장도 아마 세율이 높지 않다면 문제 제기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의 성격이 있고,²⁸⁾ 유산과세 형식을 취하는데다가 상속세율이 최고 50%에 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²⁹⁾ 이중과세라는 주장의 내용은 소득세 과세 후 남은 재산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거나 또는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관철하면 상속세 폐지 또는 자본이득과세로 이행해야 한다는 결과에 이른다.

이중과세 주장을 통한 상속세 폐지 또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주장에 대하여, “효율로 보나 공평으로 보나 상속세·증여세의 존재 근거는 소득세보다 더 탄탄하며,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전제로 한다.”고 하여 상속세 폐지를 부정하거나,³⁰⁾ 현행 헌법이 사회국가를 수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에 다시금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내지 과도한 조세부담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견해³¹⁾도 있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한 국가가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³²⁾ 우리 세법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이, 소득세는 피상속인이 납부한

25)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02> ; Gross income does not include the value of property acquired **by gift, bequest, devise, or inheritance.**

26) Michael J. Graetz · Deborah H. Schenk, 『Federal Income Taxation』, Foundation press, Inc, 1995, p.139.

2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2502> ; The tax imposed by section 2501 shall **be paid by the donor.**

28) 차진아, 전계 논문, p.148.

29) 조경엽,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정책연구』 2015-33, 한국경제연구원, 2016.1, p.12.에서는 100억 원의 금융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62억 5,900만 원의 세 부담, 즉 62.59%의 실효세율로 상속세 부담을 하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30) 이창희, 『세법강의(17판)』, 박영사, 2019, p.1011.

31) 차진아, 전계 논문, p.151.

32) 이에 관한 언론보도로는 매일경제, “캐나다·호주·노르웨이·스웨덴·체코… 자본유출 막으려 앞 다퉈 상속세 폐지”(2018.8.29.자). 이에 의하면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캐나다, 상속세를 폐지한 호주, 스웨덴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의 미미한 세수, 상속·증여세 유지에 대한 정치적 비용이 너무 컸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조세회피 유인을 크게 감소시켜 국외로 유출되던 자본을 국내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님은 명백하지만, 상속세 과세 상 유산과세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볼 여지도 있게 된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50%와 소득세 최고세율 46.2%를 고려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중과세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생각건대 이중과세인지 여부의 판단은 논리적 타당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 선택의 문제이며, 결국 소득세를 포함한 상속세 부담의 적정성이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상속세를 부담이 크지 않다면 이중과세 여부를 주장할 가능성이 적거나 이중과세이더라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 세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상속세 부담이 적정한가 여부는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제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세율, 공제제도, 인플레이션 반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세율

먼저 세율과 관련해서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0억 원 초과인 경우 2억 4천만 원+초과금액의 40%, 30억 원 초과인 경우 10억 4천만 원+초과금액의 50%를 과세하는 것으로 정해져있다(상증세법 제26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30%(20억 원 초과 시는 40%)를 할증하며 증여세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동법 제27조, 제57조). 미국의 상속세는 최대 40%, 일본은 6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 55%, 영국은 40% 단일세율, 독일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 상속인에 대하여는 2,6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30%로 과세하고 있다.³³⁾ 세율만 보면 일본이 가장 높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유산취득자과세이므로 단독상속이 아닌 한 실제로는 우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지배주식의 할증평가³⁴⁾에 관한 규정인데, 예컨대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한다(동법 제63조 제3항). 이처럼 지배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30%가 할증되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와 같은 할증규정은 우리에게 특유한 것으로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데,³⁵⁾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할증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실례 등 ‘시가’가 있는 경우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 과세하게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³⁶⁾

이와 같은 50% 또는 65%의 세 부담이 적정한 것인가?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는

33) 오종현·최승문·강성훈, 전계 보고서, pp.44-54.

34) 이태로·한만수, 전계서, p.831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35) 조세일보, “① 억지추향 세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없애야 하는 이유”(2019.6.14.자).

36) 이태로·한만수, 전계서, p.832.

바와 같이 소유권의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어 재산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이른바 반액과세의 문제가 여기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³⁷⁾ 최대 46.2%의 소득세가 과세되고 난 이후의 재산에 대해서 추가로 50%내지 65%의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반액과세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잠정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납부하는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어서 공제 후의 납부세금으로 이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배주식의 평가에 30% 할증을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이를 제외한다면, 실제의 상속세 부담은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2) 공제제도

공제제도는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생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인데,³⁸⁾ 상속세법상 인적 공제제도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제19조), 2억 원의 기초공제(제18조)와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 공제 등을 포괄하는 그 밖의 기타공제(제20조)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제21조)로 되어 있다.³⁹⁾ 물적 공제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⁴⁰⁾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기초공제로 설명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으로 타당하며, 또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이므로 물적 공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에 대해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인정하는 것인데(제22조), 상속재산을 투명하고 명확한 가액으로 유지하여 과세행정에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은혜적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⁴¹⁾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제23조의2), 재해손실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의 재해에 대한 멸실·훼손에 대한 공제이므로(제25조) 특별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속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 적절한 부담과 관계되는 것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한 면세점,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것이다. 즉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10억 원까지 인정되는 상속세 면세기준이 적정한 것이냐 또는 현재의 가업상속제도에 따른 공제가 적절한 것이냐 여부가 상속세 부담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하게 된다. 이 경우의 적정성 판단은 결국 외국 제도와의 비교

37) 상속세·증여세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이동식, “독일 세법상 소위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조세법연구』 15-1, 한국세법학회, 2009.4, p.25).

38) 이태로·한만수, 전거서, p.727.

39)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제도의 분류를 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와 인적 공제와 물적공제로만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 조문 체계상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물적공제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40) 서정우, 전거 논문, p.146.

41) 이태로·한만수, 전거서, p.732.

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상속세 과세 면세점을 살펴보면, 우리와 같이 유산과세형인 미국은 상속세 과세최저한은 1,180만 달러를 인정하는 대신에 기초공제나 가업상속 등을 인정하지 않아,⁴²⁾ 제도가 단순화되어 있다. 원화로 130억 원을 넘는 유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산취득자과세형인 독일은 배우자에게 최대 75만유로, 자녀는 45만 유로 등 대략 120만 유로(약 17억 원)의 공제를 인정하여 금액상 우리보다 많다.⁴³⁾ 그런데 과세표준이 75,000유로 미만인 경우 7%로 과세하고 2,6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30%로 과세하므로,⁴⁴⁾ 우리보다 전체적인 세 부담이 낮은 것은 확실하다. 역시 유산취득자과세형인 일본은 기초공제액으로 「3,000만 엔+600만×상속인수」를 인정하고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 이내인 경우에는 전액, 법정초과분 이상인 경우 1억 6천만 엔을 공제하는데,⁴⁵⁾ 2.3억 엔(약 25억 원) 정도가 면세점에 해당하여⁴⁶⁾ 역시 우리에게 비해 세 부담이 많지 않다. 영국의 경우 통상 325,000파운드(약 5.6억 원)이 면세점이지만, 배우자간에는 이를 이전할 수 있어서 일방 배우자 사망 시 공제받지 않았다면 최대 65만 파운드(약 11.2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었는데, 2017년부터 새로운 추가공제가 10만 파운드씩 인정되고 2019년 현재 15만 파운드, 2020년까지 175,000파운드까지 증액되고 역시 배우자에게 이전 가능하여 결국 총액으로는 2019년 현재 최대 95만 파운드까지 공제가 인정된다.⁴⁷⁾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가업상속이다. 이에 대하여는 많은 논문 등에서 7년간 가업 및 고용을 유지하면 100% 공제해주는 독일이나, 비상장주식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영국⁴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 유지, 주된 업종 변경 제한, 기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의 무 등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⁴⁹⁾는 주장이 계속 되었으며,⁵⁰⁾ 2019년 세법개

42) <https://www.irs.gov/pub/irs-pdf/i706.pdf>, Instructions for Form 706, p.2.

43) 서정우, 전계 논문, p.152.

44) 오종현·최승문·강성훈, 전계 보고서, pp.47-48.

45) 예컨대 자녀가 2인인 경우 기초공제액은 「3,000만 엔+600만 엔×2=4,200만 엔」이며(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에 미달하여 취득하는 경우 전액, 초과하는 경우 1억 6천만 엔을 한도로 공제한다(동법 제19조의2 제1항).

46) 서정우, 전계 논문, p.152.

47) <https://www.telegraph.co.uk/tax/inheritance/does-new-inheritance-tax-perk-work/> : 최종 접속일자 2019.10.4. This new allowance will begin at £100,000 per individual, rising to £125,000 in 2018, £150,000 in 2019 and £175,000 in 2020.

48) <https://www.gov.uk/tax-property-money-shares-you-inherit/money-and-shares> : 최종접속일자 2019.10.4. ; “대부분의 경우 현금과 주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49) 국세청통계연보(2018)에 의하면 2016년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76건, 2017년은 91건으로서 2013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74.4건 정도에 불과하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이용건수도 2016년 130건, 2017년 173건 정도로 나타나있다.

50) 예컨대 정승영,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

정안에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일부 개정이 있었다.⁵¹⁾ 기업상속에 대해서는 별개의 논문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므로⁵²⁾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고 다만 기업승계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차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발전 및 고용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고,⁵³⁾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중심으로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⁵⁴⁾

(3) 인플레이션의 반영

또 하나의 판단기준은 인플레이션과 관계된 것이다. 세율구조 또는 공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했느냐 즉 위 제도에서 정하는 세율이나 공제액 등이 얼마나 자주 증액되느냐 하는 것이다. 현실 사회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도적 변경이 늦어질수록 명목가치의 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이 상승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거나 또는 공제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실질소득이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의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적용 세율구간이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을 구간 상승(bracket creep)이라고 하는데,⁵⁵⁾ 상속세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과세구간의 조정이 없다면 상속세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거의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속세 최고세율 금액을 증액하여 왔는데, 예컨대 2011년 500만 달러, 2012년 512만 달러, 2013년 525만 달러 등 증액하다가 트럼프 정부인 2018년 1,180만 달러로 증액하였다.⁵⁶⁾

라. 사전상속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재산 전부를 일괄상속 하는 경우에

국기업법학회, 2014. pp.121 - 150 ; 김은수,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관한 지원세제 검토 : 기업상속공제 요건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제16권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5.12, pp.253 - 276. 등 ; 아이뉴스, “韓 상속세 최고세율 OECD 2위 … “기업승계에 자본이득세제 도입” 다수”(2019.7.26.자).

51) 조세일보, “기업상속공제 개편, 정부는 왜 ‘통 큰’ 모습을 보이지 못했나”(2019.8.1.자).

52)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김완석, “기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19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8, pp.3 - 46. 주요한 결론은 “첫째 중소기업의 존속 및 발전을 지원하고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라는 거시적 관점으로서의 전환, 둘째 기업승계는 상속승계보다는 증여승계가 바람직하다, 셋째 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경영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등이다.

53) 정승영, 전제 논문, p.145. ; 서울경제, “상속세 완화는 부 아닌 고용 대물림이죠”(2019.7.31.자) 등

54) 서울경제, “기업승계 활성화하려면 ‘증여’ 중심 세제개편 필요”(2019.8.4.자).

55) Harvey S.Rosen · Ted Gayer/이영 · 전영준 · 이철인 · 김진영(편역), 『Rosen의 재정학(제9판)』, 맥그로 힐코리아, 2018, p.505.

56) <https://www.irs.gov/pub/irs-pdf/i706.pdf>, Instructions for Form 706, p.9.

비해 사전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식의 저가양도를 통해 증여의제 된 재산가액도 포함된다.⁵⁷⁾ 상속세 부담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에 대하여 보충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그 가산 범위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 일본 상속세법 제19조는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⁸⁾ 미국도 사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의 증여만을 가산하고,⁵⁹⁾ 영국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사망 전 3년 이내에 325,000파운드(약 5.6억 원)를 초과하는 증여를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40%로 과세하되 매 1년 당 8%씩 감액하여 6~7년 간 증여한 금액은 8%로 과세한다.⁶⁰⁾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10년 동안의 증여가액을 가산하고 있다.⁶¹⁾ 우리의 가산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긴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⁶²⁾

4. 소결

조세의 부과·징수는 그것이 사유재산권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권 침해로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며, 그 결과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면 그것이 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세 부담이 적정한지 여부는 상속 개념에 배우자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입법례도 달라지는데 세법상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의 집중 억제라는 상속세 과세 이유를 수궁하더라도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상속세의 폐지와 자본이득과세로 이행하는 입법례도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지 않다면 이중과세 주장도 약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상속세 부담의 적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상속세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세율 및 과세구간, 공제제도, 인플레이션 반영 등인데,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며, 논의되었던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⁶³⁾

57) 이태로·한만수, 전거서, pp.717-718.

58) 金子宏, 『租税法(21版)』, 弘文堂, 2016, p.611.

59) Instructions for Form 706 For decedents, p.28.

60) <https://www.gov.uk/inheritance-tax/gifts> : 최종 접속일자 2019.10.4

61) 서정우, 전거 논문, p.156.

62) 이태로·한만수, 전거서, p.718.

63) 본문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정리한 것임.

〈표 1〉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 비교

구분	우리나라	일본	독일	미국	영국
과세방식	유산세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유산세	유산세
최저세율	10%	10%	7%	5%	40% 단일세율
최고세율	50%	55%	30%	40%	
과세구간	5	8	7	12	
인적 공제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3000만 엔 + 600만 엔 × 상속인 수	배우자 75만 유로, 자녀 45만 유로	인정하지 않음	배우자 상속세 면제
면세점	10억 원	2.3억 엔 (25억 원)	120만 유로 (17억 원)	1,180만 달러 (130억 원)	95만 파운드 (16억 원)
배우자증여	과세	과세	과세	면제	면제
배우자공제한 도	최대 30억	최소 1억 6천만 엔(한도 없음)	50만 유로	무제한	무제한
상속인 결정	법정	법정	피상속인 지정	피상속인 지정(유언자유)	피상속인 지정(유언자유)
사전 상속 가산	10년	3년	10년	3년	3년 40%, 그 후 1년마다 8% 경감
지배주식 할증평가	최대 3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가업 승계	고용유지 의무, 업종변경 제한 등 요건 엄격함	비상장 중소기업 증여 80% 공제	조건 충족 시 7년 100% 공제	없음	비상장주식 100% 공제
세율구간 조정	2000	2015	2008	매년	2011

III.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

1. 과도한 상속세 부담

현행 상속세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무거운데,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에 비해 주요 세율도 높고, 면세점 또는 최고세율의 기준금액이 낮으며 특히 배우자에 대한 배려는

더 적어서, 구체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도 제도 자체만으로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둘째 다른 세제보다 구간 상승(bracket creep)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상속세제의 과세 표준 구간은 2000.1. 이후 수정된 바 없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00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 66.6, 2008년 86.1, 2014년 99.3, 2016년 101, 2018년 104.5로서,⁶⁴⁾ 2000년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40%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명목가치가 그만큼 상승하였는데 그 조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구간의 상승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셋째 최근 부동산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 평가가 급증하였다는 점인데,⁶⁵⁾ 서울 및 주요 광역시가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형 단지에 속하는 아파트의 경우 시가 대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으나, 토지나 상가, 주택 등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어 대부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되는데(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⁶⁶⁾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이 기준시가액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넷째 지배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가업승계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여 잘 시행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큰 실정이다. 최근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입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세 부담완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2. 배우자 상속부담 과중

배우자 지위에는 일반 상속인과 다른 특징이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생존배우자의 생활보장과 부부재산의 청산이라는 2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분할을 통한 부부재산의 청산 시 배우자에게 50% 정도의 재산을 분여받는 비율

64) <http://ecos.bok.or.kr/jsp/vis/prices/#!/cpiy>

65) 매경이코노미, “[부동산 이슈 Briefing] 2019 전국 개별공시지가 발표—서울 12.35% 급등… 최고 상승률은 중구”(2019.6.3.자). 지난 5월 30일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12.35% 오르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역시 8.03%를 기록,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 6.28%에 비해서도 1.75%포인트 올라 지난 2008년(10.05%) 수준에 근접했다. **… 서울을 제외하면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지역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66)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현재 부동산과 주식 모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다.

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생활보장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배우자의 상속권은 최소 2분의 1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상속세 부담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배우자의 상속부담이 과중하다. 상속세법 제19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지분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한 재산을 뺀 금액의 한도에서 공제를 인정하되, 최대 30억 원을 공제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기준금액⁶⁷⁾×배우자의 법정 상속분⁶⁸⁾—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③ 30억 원 중 작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공제가 인정된다.⁶⁹⁾ 그래서 예컨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가액이 25억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한 명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2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위 산식에 의하여 $\text{Min}(20\text{억 원}, 25\text{억} \times 0.6 = 15\text{억 원}, 30\text{억 원}) = 15\text{억 원}$ 이 된다. 특히 자녀가 1인인 경우 배우자상속분은 60%이지만, 2인인 경우에는 약 43%, 3인인 경우에는 약 33%, 4인인 경우에는 약 27%로 줄어드는 등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은 무조건 재산분할에 의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된다.⁷⁰⁾ 상속지분도 자녀가 늘어날수록 줄어들고 더구나 배우자공제액도 작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을 것이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자녀들은 성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생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⁷¹⁾ 예컨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2분의1을 상속시키는 일본의 경우에는 부부생활 청산의 의미도 반영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권을 강화하고 있다.⁷²⁾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상속세

67) 기준금액이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 및 채무 등을 공제하고, 합산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68)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포기가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배우자의 공동상속분을 말하는데,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결과적으로 30억 원까지는 전혀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이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태로·한만수, 전거서, p.730. ; 박훈·채현석·허원, 전거서, p.310).

69) 박훈·채현석·허원, 전거서, p.308.

70) 정구태,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단상”, 『강원법학』 제41권, 2014, pp.990-992.

71) 민법상 강화방안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9조 2항을 개정하는 방안,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를 상속의 경우에도 원용하는 방안,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여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전경근, “배우자상속분의 현황과 전망”,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2013.12, pp.206-210).

72) 최현숙·최명구, “배우자 상속의 제한”, 『민사법학 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12, p.201.

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상속권이 강화되어 있다.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이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일본 재무성에서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률(=세액/과세가격)을 계산한 자료가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로서 3억 엔의 재산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1.63%, 프랑스는 8.08%, 영국은 11.9%, 일본은 55% 세율 인상에 따라 7.67%에서 9.53%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미국의 경우는 1,180만 달러의 면세점이 존재하여 세액 부담이 없었다.⁷³⁾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의 경우 33억 원⁷⁴⁾ - 10억 원⁷⁵⁾ = 23억 원 $\times$ 0.4% - 1.6억 원⁷⁶⁾ = 7.6억 원이 되어, 상속세 부담률은 $7.6 \div 33 = 23\%$ 가 된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배우자 상속세 부담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개편방향

1. 과세표준구간 증액과 유산취득자과세로의 변경을 통한 부담 완화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 낮은 과세구간, 최대 50% 높은 세율, 인플레이션, 가업승계요건의 엄격성 등 요소를 고려하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그 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인적공제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속세 부담이 낮게 나오는 것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면서도 과세구간이 우리에게 비해 폭이 넓고 그 최고세율이 30%로서 낮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먼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인 상속세법 제25조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최고세율의 적용가액을 2,600만 유로 등과 같이 높이는 방안과, 최고세율을 독일과 같이 30%로 낮추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인데, 상속세법 제2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전상속에 포함되는 기간을 현행 10년(상증세법 제13조)에서 3년 또는 5년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상속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채택되기 어렵다면, 최소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 구간의 개편은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과세표준 구간은 2000.1. 이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간상승 효과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조세법률주의에

73)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property/149.htm

74) 3억 엔을 100엔 당 1,100원으로 환산한 것임.

75) 배우자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산한 것임.

76) 과세표준 23억 원에 대한 세율은 40%로서, 누진공제액은 1.6억 원임.

위반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사건으로는 이중과세 논란, 상속세수의 규모나 상속세 부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배주식의 할증평가나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그것을 ‘상속’의 관점보다는 ‘계속기업의 경영자 변경’관점에서 보아 지배주식이나 가업 관련 주식의 처분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기업”의 관점에서 상속세 과세를 이연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 면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배우자공제제도의 확대

배우자는 상속의 대상인지 여부, 부부재산 청산 고려 등 상속세 부과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민법상 상속지분을 최소한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세법상으로는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많은 경우라도 최대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배우자상속공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생존배우자의 기여도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상속세 면세점과 과세구간 등을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고, 세율은 높은 편이어서 배우자의 세 부담이 과중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우자 공제와 상속에 관한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예컨대 200억 원의 재산을, 이혼하여 자 A가 상속하는 경우와 법정상속 하는 경우로 나누어 계산해보기로 한다. 이때 모두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하되 상속세율은 계산 편의상 50%가 적용되며 법정 상속된다고 가정하고 배우자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① 부부가 이혼하여 재산을 각 100억 원씩 재산분할한 후 자 A가 상속한다면, A의 상속세는 갑과 을 각각에 대하여 50억+50억=100억 원이 된다. ② 이혼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최대 30억 원을 공제한 170억 원에 대해서 50%인 85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배우자는 54억 원, A는 31억 원), 그 후 잔존배우자가 사망하면 그가 상속한 120억 원 중 상속세 납부액 51억 원을 공제한 69억 원에 대해서 사망 시 50%인 35억 원의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 결과 총 12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된다.

일본의 경우라면, ① 이혼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6억 엔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 55%의 세율이 과세되므로 부와 모 각각에 대하여 약 46억 5천만 원⁷⁷⁾이 되어 총 93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며, ② 법정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분 2분의 1은 비과세되므로 최초에 9억

77) 100엔=1100원으로 하여, 66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55%의 세율인데 공제액은 7,200만 엔이므로, 대략 계산하면 100억 원=9억 엔으로 하여, 9억 엔×0.55-7,200만 엔=4억 2,300만 엔이므로 4억 2,300만 엔×1.1=46억 5천만 원이 계산됨.

엔에 대하여 55%의 세율로 과세하되 7,200만 엔의 공제를 적용하는 결과 이혼하여 각각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즉 이혼과 상속의 경우에 차이가 없이 총 93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라면, ① 이혼하여 상속하는 경우 1,180만 달러⁷⁸⁾ 즉 130억 원을 초과하는 70억 원에 대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면 각각 14억 등 총 28억 원의 세금이 계산되며, ② 법정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일단 35억 원의 40%인 14억 원이 과세되었다가 생존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시 14억 원이 과세되는 결과가 된다. 즉 이혼과 상속의 경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총 세액은 28억 원 정도로 계산된다.

독일의 경우라면, ① 이혼하여 상속하는 경우 각각 100억⁷⁹⁾ 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128만 유로,⁸⁰⁾ 즉 15억 4,000만 원으로 총 30억 8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고, ②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230만 유로⁸¹⁾ 즉 약 35억 2천만 원의 상속세가 과세된 후, 생존배우자가 사망하면 115만 유로⁸²⁾ 즉 13억 8천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어 총 35억 2천+13억 8천=49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하는 경우의 세 부담이 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요국의 재산분할과 법정 상속에 따른 상속세 차이 비교

(단위 : 억)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재산분할	100	93	28	30.8
법정 상속	120	93	28	49
차이	상속+20	0	0	상속+18.2

위 <표 2>에 따르면 동일한 액의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본의 경우는 배우자상속 공제의 한도가 없어서, 독일의 경우는 상속세율이 30%로서 낮기 때문이다. 배우자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기업에게는 확대되는 배우자 공제액만큼의 과세가 연기

78) 면세점 1,180만 달러를, 편의상 1,100원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130억 원으로 계산함.

79) 계산편의상 100억 원을 800만 유로로 환산하고자 함.

80) 600만 유로까지는 15%, 60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 19%가 과세되므로 누적 공제액과 기초공제액을 공제하면 대략 90만 유로+38만 유로=128만 유로.

81) 총 1,600만 유로의 재산 중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100만 유로를 공제하면 1,3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 23%가 과세되므로, $1,300 \times 0.19 + 200 \times 0.23 = 247\text{만} + 46\text{만} = 293\text{만 유로}$.

82) 800만 유로에서 배우자 상속세액 147만 유로 및 기초공제 40만 유로를 공제한 613만 유로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600\text{만} \times 0.15 + 13\text{만} \times 0.19 = 115\text{만 유로}$.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확대를 통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기업의 승계 정책 및 경영 관련 정책에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배우자에 대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한도 제한 없이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대체로 그러하여 상속세 부담도 적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법정 상속 간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공제 한도도 일본의 경우처럼 상속재산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속에 포함되는 것, 즉 아래 세대로의 재산이전을 상속으로 파악하여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배우자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함이 필요하다.⁸³⁾ 이것이 어렵다면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상속분 범위 내라면 배우자 공제의 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상속세법 제19조 제1항의 내용 중 “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면세 금액 확대와 공제단순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금액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낮은 데다가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기준금액 역시 낮은 상태이다.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여러 가지 인적·물적 공제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아야 하는데, 그 계산과정은 쉽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면세 금액을 아주 크게 하고 인적·물적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적·물적 공제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평균 수명이 길어져 배우자가 더 중요해지고 자녀도 많이 낳지 않는 세대를 생각하면 상속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필요하다면 자녀의 수에 따라 면세점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상속세가 과중하여 적정한 상속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 및 입법 활동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권의 의미, 상속세와의 관계를 ‘상속’의 본질과 연결하여 논하였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지위가 특수한 것이므로 상속법 및 상속세제상 현재보다는 그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비교법적으로 설명하였다. 현재의 상속세제는 그 부담이 과중하고, 배우자에 대한 부담도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는 내

83) 조경엽, 전계 보고서, p.14.

용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미국식으로 면세점을 큰 액수로 인정하고 각종 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상속세법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의 입법개선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상속세제 개편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입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① 사전상속 가산기간을 10년에서 3년이나 5년 등 단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②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및 기준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상증세법 제2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③ 배우자공제의 확대가 필요한데, 배우자공제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한 상증세법 제1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①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과세가액과 공제, 과세표준 등 상당한 조문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 ② 가업승계의 경우에도 상속이 아닌 “고용의 측면” 또는 “계속기업의 측면”으로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업승계의 인정요건과 평가,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③ 배우자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이다. 민법에서 상속지분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증세법 차원에서는 예외적인 상속의 대상으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공제한도를 증가하거나 상속세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④ 면세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상증세의 기본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박윤직. 1997. 『상속법』, 박영사.
- 김상훈. 2012. 『미국 상속법』, 세창출판사.
- 김은수. 2015.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관한 지원세제 검토 :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증여세 과세 특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공법학회.
- 金子宏. 2016. 『租税法(21版)』, 弘文堂.
- 김학성. 2018. 『헌법학원론(전정판)』, 피앤씨미디어.
- 박 훈 · 채현석 · 허 원. 2016. 『상속 · 증여세 실무 해설』, 삼일인포마인.
- 서정우. 2018.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 : 인적 · 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8집 제3권), 한국조세연구포럼.
- 성낙인. 2019. 『헌법학(제19판)』, 법문사.
- 양 건. 2013. 『헌법강의(제4판)』, 법문사.
- 오종현 · 최승문 · 강성훈. 2016. 『상속 · 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16-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윤진수. 2018.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 이동식. 2009. “독일 세법상 소위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조세법연구』 15-1, 한국세법학회.
- 이창희. 2019. 『세법강의(17판)』, 박영사.
- 이태로 · 한만수. 2014. 『조세법강의』(신정10판), 박영사.
- 전경근. 2013. “배우자상속분의 현황과 전망”,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 정구태. 2014.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단상”, 『강원법학』 제41권.
- 정승영. 2014.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기업법학회.
- 조경엽. 2016.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정책연구』 2015-33, 한국경제연구원.
- 차진아. 2013.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최현숙 · 최명구. 2009. “배우자 상속의 제한”, 『민사법학 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 Harvey S.Rosen · Ted Gayer/이 영 · 전영준 · 이철인 · 김진영(편역). 2018. 『Rosen의 재정학 (제9판)』, 맥그로힐코리아.
- Michael J. Graetz · Deborah H, Schenk. 1995. 『Federal Income Taxation』, Foundation press, Inc.
- 뉴스1, “경총 “징벌적 상속세율 내려야”...정부에 의견서 제출”(2019.8.14.자).
- 매경이코노미, “[부동산 이슈 Briefing] 2019 전국 개별공시지가 발표-서울 12.35% 급등...최

고 상승률은 중구”(2019.6.3.자).

매일경제, “캐나다·호주·노르웨이·스웨덴·체코…자본유출 막으려 앞 다퉈 상속세 폐지”(2018. 8.29.자).

매일경제, “韓상속세 명목·실효세율 모두 세계최고…부의 세습 아닌 기업영속성 차원서 봐야”(2019.5.28.자).

서울경제, “기업승계 활성화하려면 ‘증여’ 중심 세제개편 필요”(2019.8.4.자).

서울경제, “상속세 완화는 부 아닌 고용 대물림이죠”(2019.7.31.자).

서울경제, “세계최고 수준 상속세…오너들 세금 내느라 지분 줄줄이 매각”(2019.5.28.자).

아이뉴스, “韓 상속세 최고세율 OECD 2위…“기업승계에 자본이득세제 도입” 다수”(2019.7. 26.자).

조세일보, “① 억지준항 세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없애야 하는 이유”(2019.6.14.자).

조세일보, “기업상속공제 개편, 정부는 왜 ‘통 큰’ 모습을 보이지 못했나”(2019.8.1.자).

<http://ecos.bok.or.kr/jsp/vis/prices/#/cpiy>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https://www.gov.uk/inheritance-tax/gifts>

<https://www.gov.uk/tax-property-money-shares-you-inherit/money-and-shares>

<https://www.irs.gov/pub/irs-pdf/i706.pdf>, Instructions for Form 706.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0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250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property/149.htm

<https://www.telegraph.co.uk/tax/inheritance/does-new-inheritance-tax-perk-work/>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for the Relief of Its Burden*

Sang shin, Lee**

— <Abstract> —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and legislative activities in recent years to meet the need for the improvement of heavy inheritance tax and reduce its burden to a proper level. This study began by assessing whether the taxation of inheritance tax could be recognized as infringement on inheritance right or property right and did a theoretical review of legislation cases in major advanced nations. Th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

In a short run,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ncerned laws to reduce the years added to prearranged inheritance from ten to three or five years, change the rate of each taxation bracket and the standard amount by reflecting the inflation rate, and increase the upper limit in deduction for spouse above the current three billion won or abolish the upper limit as long as it is within the scope of shares of statutory inheritance.

In a long run,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tax system to replace the taxation method for inheritance tax with that for acquisition tax on inheritance, view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in the aspect of “employment” or “going concern” instead of inheritance, and reinforce the status of spouse more than the current level. The plans for the considerable increase of tax exemption and the reduction or abolition of all kinds of deduction systems will just simplify the application of inheritance tax. It is a task whose discussion should start now to change the basic structure of inheritance tax.

<Key words> inheritance tax,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deduction for spouse, bracket creep, acquisition tax on inheritanc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8 sabbatical year research grant of the University of Seoul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 of Seoul, sslee@uos.ac.kr